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육성 종합계획으로 변경〉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육성 종합계획으로 변경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7.
3. 회부연월일 : 2025.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소상공인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경제 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 또는 시혜성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보호에 초점을 둔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자주적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구조 고도화,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육성 종합계획으로 변경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 동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장 소상공인 <u>지원 기본계획</u> 수립 및 운영 체계	제2장 소상공인 <u>육성 종합계획</u> 수립 및 운영 체계
제7조(소상공인 <u>지원 기본계획</u> 수립·	제7조(소상공인 <u>육성에 관한 종합계획</u>

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수립·시행) 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종합계획”이라-----

② 종합계획을-----

-----.

③ 종합계획에는-----
-----.

1. 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 업종별 육성 및 발전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인력 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그 밖에 <u>기본계획</u>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u>지원</u>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u>기본계획</u>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u>지원</u> 시행계획(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u>시·도지사</u>”라 한다)는 <u>기본계획</u>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u>지원</u> 시행계획(이하 “<u>지역별 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	<u>사항</u> 11. <u>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u> 12. <u>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u> 13. <u>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u>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u>종합계획</u>의----- ----- -----. 제8조(소상공인 <u>육성</u>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u>종합계획</u>에----- ----- -----<u>육성</u>----- ----- -----. ② ----- ----- -----<u>종합계획</u>에----- ----- -----<u>육성</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

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u>기본계획의</u>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⑦ (생략)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종합계획의</u>-----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기본계획에는 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과 전망에 관한 사항, ③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④ 소상공인 창업·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은 765만7천개로 전체 기업 수(805만3천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1%이고, 종사자는 1,074만1천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2,341만1천명) 대비 45.9%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1,272조9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액(7,494조4천억원) 대비 17.0%를 차지하고 있는바,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음.¹⁾²⁾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성장보다는 보호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³⁾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1)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4.8.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 2023.3.

3)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어 경제 주체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⁴⁾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관련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⁵⁾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이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은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우선, 개정안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계획의 수립·시행 목적이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달라짐.

4) 국회의원 오세희 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종합 육성계획이 마련된다!”, 2025.4.7.

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2.9.23.,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새로운 미래를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과 지역(로컬) 상표(브랜드)로 제시하다”, 2023.5.1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오영주 장관, '24년 강한 소상공인 만나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육성 의지 표명”, 2024.10.29.

다음으로,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은

각각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 변경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이 외에도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업종별 육성 및 발전방안’,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인력 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

다만, 현행법이 정부로 하여금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개정안은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정부와 시·도지사가 동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각각 ‘소상공인 육성 시행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

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싹틔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육성은 정부의 책무에 해당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등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소상공인의 보호 역시 정부의 책무이므로 현행법상 소상공인
보호 관련 사항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